

III. 주요 사례의 분석

상기의 2002년도 충북 중재부 중재 심리 사건을 중심으로 시민 생활의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대 언론 분쟁 사건의 주요 사례들을 분석·재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신청인은 과속 단속에 걸린 적도 없고 과태료 상습 체납자는 더욱 아니다.”

이 보도는 방송이 교통 범칙금 체납 실태와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충북 지역 경찰 자료에 근거하여 교통 범칙금 체납액이 2001년 한 해 동안 40억 원을 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방송화면 앵커는 과태료를 받아낼 강제 조항이 없는데다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마이크를 기자에게 넘겼다.

기자는 이동식 무인 속도 측정기가 도입되면서 과속 차량을 잡아내기 위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김모 운전자는 11번 과속 단속에 걸리고도 한 차례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20차례나 적발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뻔뻔한 운전자도 있었다고 소개하였다.

이어서 임의의 차량 운전자를 인터뷰하면서 “이 차량 나중에 매매할 때 이 때 한꺼번에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미루고 있어요”라는 멘트를 인용하였다.

신청인 주장 시 외곽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카메라를 든 일단의 사람들이 차를 세워서 인터뷰를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무슨 인터뷰냐고 묻자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신청인은 “지난해 몰카맨에게 U턴을 할 때 점선을 벗어나 중앙선을 조금 넘는 장면을 찍혀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억울하여 해당 경찰서에 항의하러 갔다가 ‘억울하면 나중에 차를 매매할 때 한꺼번에 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방송에는 신청인이 한 말 중 일부를 삭제해 “차량 매매시 한꺼번에 내도 된다고 해서 그냥 미루고 있다”라는 부분만 편집 보도되었다.

신청인은 기자에게 “나는 과태료 상습 체납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화면을 그냥 내보낼거나, 화면을 아예 빼든가 내보낼 때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기자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런 약속과 달리 그대로 보도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은 명예 훼손 및 초상권 침해의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와 평가 방송사 측에서는 신청인의 주장 내용을 수용하여 응분의 정정보도를 하여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이 사건을 평가하여 볼 때 방송 측에서는 기자의 보도 내용에 부합하는 그림(화면)을 떼야 하는데 기자의 보도 내용에 등장하는 ‘김 모’ 씨나 ‘20차례나 적발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뻔뻔한 운전자’를 직접 만나서 실제로 인터뷰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하여 전혀 다른 사람의 다른 취지의 발언에서 방송에 필요한 부분만 따서 보도 내용에서 언급된 그 사람인 양 내보냈고 그림의 신빙성까지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 화면

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아니하였다.

방송사 측은 방송사 측대로 사정이 있다. 방송은 어떻게든 마감 시간에 맞추어 보도 완성품을 만들어야 하는 압력에 쫓기고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언론 측의 강력한 책임 의식과 강력한 주의가 요망되는 사안이라고 하겠다.

사례 2. “신청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한 일이 없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고속도로 00휴게소 조리실장 박 모 씨다. 신청인은 같은 조리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김모씨를 성희롱 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일이 있고 또 같은 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00휴게소로 전직 조치를 당한 일이 있지만 모두 무혐의로 밝혀져 원직에 복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신청인 측의 이러한 무혐의·원직 복귀에 성희롱 피해 고발자 김 모 여직원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공개적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하였고 이에 박씨는 김씨를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던 바 검찰은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김씨를 구속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를 주장하던 김씨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구속까지 된 것은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의 결과라며 일부 시민 단체와 노조가 「구속 규탄」 및 「석방요구」를 하는 등 김씨 구명 운동에 나섰다.

이러한 시민·사회 단체 및 노조에 의한 「구속 규탄」 및 「석방요구」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신청인이 김 모씨를 성희롱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박씨가 3개 신문과 2개 방송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보도문면 및 방송화면

A신문:(2002년 7월 2일자 3면)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돼 대전·충북 지역 사회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충북 00회와 00노총 충북 지역 본부를 비롯한 대전·충북 5개 사회단체와 노조는 2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성희롱 이중 피해 여성 노동자 구속 규탄 및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과 노동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후략)

(2002년 7월 9일자 3면) 속보=00휴게소에 근무하는 김모씨의 성희롱 피해 사건과 관련, 충북 지역 사회·여성 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9일 오전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후략)

B신문:(2002년 7월 3일자 11면) 직장 상사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 근로자가 직장 상사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되자 시민 단체들이 검찰과 노동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후략)

(2002년 7월 10일자 11면) 충북00회를 비롯한 대전·청주권 23개 시민 사회 단체로 구성된 00휴게소 성희롱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9일 오전 청주지방 노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희롱 이중피해 여성 김00」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후략)

A방송: (2002년 7월 2일 20:00 방송)

앵커: 00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오늘 청주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달 명예 훼손혐의 등으로 구속된 51살 김모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후략)

(2002년 7월 6일 20:00 방송)

앵커: 경부고속도로 모 휴게소에서 근무하다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51살 김모 씨는 휴게소 동료 여직원 6명과 함께 직장 상사 박모 씨를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집단 고소했습니다.(후략)

C신문: (2002년 7월 9일자) 성희롱 피해자가 되레 ‘명예훼손죄’등의 명목으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져 여성, 노동 단체들이 항의에 나섰다.(후략)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본인이 00휴게소에 같이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를 수 차례 성희롱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달라 중재를 신청한다.

피신청인 측은 보도에서 김모씨가 조리실 근무자 신청인을 비롯한 남성 직원 3명으로부터 수 차례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신청인은 김모 씨 외 4명으로부터 성희롱 혐의로 고발된 일이 있으나 노동부와 검찰 그리고 회사 자체의 조사와 노사 양측의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후 노조 측은 이를 여성00회에 성희롱 사건으로 신고를 하였고 회사 측은 신청인을 00 휴게소 인사발령을 냈지만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당국에 구제 신청을 낸 것이 이유 있다 하여 조리실장으로 복직하게 되었다.

신청인 측은 이러한 무혐의·원직 복귀에 성희롱 피해 고발자 김모 여직원이 반발하면서 공개적인 욕설과 모욕적 언사를 계속하였고 신청인은 김씨를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던 바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김씨를 구속하였다. 이에 대하여 각 신문과 방송들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돼 대전·충북 지역 사회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해 신청인이 하지도 않은 성희롱을 정말로 한 것처럼 인식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처리결과와 평가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이 일부 매체에서(A방송 제외) 받아들여져 해당 언론사들이 신청인 요청 취지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을 평가하여 볼 때 신청인이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은 언론사들의 입장에서는 여성 근로자 김모씨의 구명 운동의 입장에서 서 있는 시민·노동 단체들의 2차에 걸친 기자 회견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가운데서 빚어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 측에서 볼 때 뉴스 현장에서 그때그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정도이며 이때 취재원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 자체의 진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은 취재 측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식 논리”에 입각한 “객관주의” 보도 입장은 취재원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 자체의 良否에 의하여 보도의 良否가 좌우된다는 면에서 자못 위험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기자회견」 사실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보도문의 서두 실마리 문장에 해당되는 리드(Lead) 에서는 보도문 전체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의 취지를 인용 부호 없는 서술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결국 「객관적」 기자회견 내용의 보도라도 그 회견 당사자들의 주장에 언론이 동조하는 것으로 비쳐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언론사는 시민·사회 단체의 회견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죄밖에 없으므로 신청인이 피해를 보았다면 그것은 이들의 회견에 의한 피해이지 엄밀히 따져 언론의 공표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언론사의 면책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취재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인용 부

호도 없이 자가보도의 형식으로 지면에 내보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취재 측은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3. “총장과 그의 측근들이 독선적이고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으로 물의를 빚어 왔다는 논설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중재심리사건과 달리 기사 종류 중에서 객관성에 입각해서 쓰여지는 뉴스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필자의 주관에 의해서 작성되는 논설(칼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에서는 동법에 의한 반론 보도 청구 대상 기사를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이라고 함으로써 사실 기사(뉴스 보도기사)와 주장 기사(논설·칼럼)를 별도로 구분하여 놓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관계 법리상 사실 보도와 의견 표명은 다르다고 보는 것이 보통²⁾인 점에 비추어 언론 중재에 있어 양자를 어떻게 달리 취급해 주어야 옳은가가 논점이 될 수 있다.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인 한 공개적인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 언론 측 입장과 비록 「공익에 관한 언론」이라도 私人の 인권과 권익을 현저히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간의 대립을 엿볼 수 있는 다음의 사례를 재음미해 보고자 한다.

논설문면 제목: 교육부의 00대 해교 행위

내용: 00대가 이토록 철저히 망가지는데 공헌한 해교자(害校者)로서 00 학원 관선이사회와 교육부가 서로 선두를 다툰다. 이 중 어느 누구를 일등공신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현직 총장이 독직(瀆職) 사건으로 구속되는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00학원 관선이사회와 교육부는 00대를 방치했다.

개선 장군이 돼 돌아 온 총장과 그의 측근들이 00대를 통치하는 방식이 ‘공포정치’ 수준이며, 별이는 일마다 ‘위험하다’는 경고음이 수차례 울렸음에도 감독 기관인 관선이사회와 교육부는 직무를 유기했다. ‘곧 터진다’는 내부 구성원과 언론의 황색 신호를 모함이라 일축하지 않고 겸허하게 귀 기울였다면 사전에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후략)

신청인주장 신청인 00대학교(총장 000)와 학교 법인 00학원(이사장 000)은 00일보 2002년 11월 19일자 6면 『교육부의 00대 해교 행위』라는 제목의 컬럼에 대하여 중재를 신청한다.

위 칼럼은 허위의 사실, 혹은 근거 없는 사실에 기초하여 00대와 00학원, 그리고 00대 총장과 보직교수 등에 대하여 매도를 포함한 대단히 악의적이고 왜곡된 논지로 일관하면서 00대에 대하여 “칼을 대야 한다”는 극단적인 폭언을 결론으로 삼고 있다. 이는 사실보도와 이에 기초한 공정한 논평이라는 언론 본연의 자세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00대 전체와 00학원, 그리고 총장과 보직교수들의 대외적 이미지와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또한 00대 7,000여 학생을 위시한 대학 구성원과 00학원 산하 구성원 모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폭거이다. 이에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반론 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후략)

처리결과와 평가 피신청인인 00일보 측은 신청인인 00학원과 00대학교의 반론보도 청구

2) 권기훈, “의견 표명에 의한 명예 훼손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례 검토”, 「언론중재」, 2002 봄, 53-71

내용을 받아 들여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과 같은 취지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함으로써 종결된 사건이다.

신청인 측은 00대가 인사 및 재무 행정, 학사 운영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였으며 현재 재판중인 도서관 신축 관련 혐의에 대하여도 무죄임을 확인 받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0일보는 신청인 측에 대하여 악의적이고 왜곡된 논지의 논설을 게재함으로써 신청인 측의 대외적 이미지와 명예 손상 및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일반 중재 사건과 달리 뉴스 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논설(칼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원래 관계 법리에 따르면 언론에 의한 명예 훼손이란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가 포함된 경우로 제한되고 단순히 타인이나 사건에 관한 비평이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때는 명예 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³⁾

특히 미국에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또는 일반 공중의 관심사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누구라도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그것이 공적 활동과는 무관한 사생활의 폭로나 인신 공격에 이르지 아니하고 공정한 한도 내에서는 그 표현이나 용어가 아무리 신랄, 격렬하더라도, 또 그 논평의 결과 피논평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에도 논평자에게 명예 훼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⁴⁾ 이에 반해 우리 법원은 “...의견이나 견해의 표명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우리 법원은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고, 그 경우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실시하였다.⁵⁾

어쨌든 본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 측 청구를 수용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결론이 나서 사건은 일단락 되었지만 논설이나 칼럼에서도 명예 훼손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라고 하겠다.

IV. 시사점과 논의점

위에서 다룬 주요 사례들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의 경우는 기자가 할 이야기는 따로 있는데 이야기를 뒷받침할 자료가 따로 없을 때 선의의 시민을 도구로 삼아 그림을 짜맞추기 한 경우로 명백히 피해자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두 번째의 경우는 제3자에 의하여 제보된 자료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료 자

3) 권기훈, 상계 논문

4) 幾代通, “アメリカ法における 名譽毀損と Fair Comment- 事實の 眞實證明に 關して”, 『未延還曆記念·英美私法論集』, p.26

5) 권기훈, 상계 논문